

의안번호	제 138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263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7년 9월 3일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
----------	-----

발의연월일 : 2007. 9. 3.  
 발 의 자 : 권광택·민경환·이영복  
 이규완·박종갑·이대  
 원·정윤숙(7인)

## 1. 제안이유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변경(안 제4조)

나.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안 제27조)

- (1)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

라.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함(안 제33조).

마.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 증설기업도 포함하기로 함(안 제34조).

###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불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기획관리실장 " 을 " 정책관리실장 " 으로, " 경제통상국장 " 을 " 경제투자본부장 " 으로, " 문화관광국장 " 을 " 문화관광환경국장 " 으로 " 건설교통국장 " 을 " 건설재난관리본부장 "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중 " 투자유치진흥기금 " 을 " 투자진흥기금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 기타 잡수입 " 을 " 차입금 및 기타 잡수입 " 으로 한다.

제17조중 " 경제통상국장 " 을 " 경제투자본부장 " 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다음에 " (이하 " 지원기준 " 이라 한다.) " 를 삽입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 투자 " 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중 "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금액 " 을 " 토지매입 금액 " 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 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 을 " 타 시·도 이전기업 등

준용 " 으로 하고, " 국내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 " 를 " 도내공장 증설 기업 " 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중 "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를 삭제 한다.

제34조제1항중 " 이전기업 " 을 "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증설 기업에 대한 "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생략) ②(생략) 1. <u>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u> 2. ~ 4.(생략) ③(생략)</p>	<p>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u>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u> 2. ~ 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 ③(생략) ④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관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p>	<p>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 ③(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제13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생략) ②(생략) 1. ~ 3. (생략) 4. <u>기타 잡수입</u> ③ ~ ④ (생략)</p>	<p>제13조(투자진흥기금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u>차입금 및 기타 잡수입</u>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u>경제통상국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②(생략)</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u>경제투자본부장</u>----- -----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도 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예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 ----- ----- ----- ----- ----- ----- ----- (이하 "지원 기준" 이라 한다.) ----- ----- -----</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3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생략) 1. ~ 2.(생략) ②이전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 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추가 용자 지원할 수 있다.</p>	<p>제3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토지매입금액 ----- ----- -----</p>
<p>제31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 21조 및 제 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1조(타 시·도 이전기업 등) ----- ----- 도내 공장증설 기업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지원한도) 제28조의 타 시·도 이전보조금 및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2조(지원한도)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1. ~ 2.(생략)</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lt;삭제&gt;-----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도지사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이 경우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②(생략)</p>	<p>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 증설 기업-----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인구밀도
-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도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지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도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도지사는 도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3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이전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 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추가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지원한도) 제28조의 타 시·도 이전보조금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 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과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